

보상계획 열람공고(이주·생활대책 포함)

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(주)에서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-3호,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호(2010.01.13)로 고시된 “영암·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(구성지구)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과 이주·생활 대책을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『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』 제11조,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이주·생활 대상자 포함)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, 토지·물건조서의 내용 및 이주·생활대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 : 영암·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(구성지구) 개발사업
- 나. 사업의 위치 :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, 상공리, 덕송리 일원
- 다. 사업의 규모 : 20,959,540m²
- 라. 사업 기간 : 2010 ~ 2020년 (목표연도 2025년)

2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

- 가. 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(분묘 포함) 등과 권리일체
 - 편입 토지 및 물건 조서 : 별도첨부
- 나.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(미등기 소유자·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.
- 다. 해남군 (인터넷)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3.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

가. 이주대책

- 이주대책 대상자
 - 선정기준 : 당해 개발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(2008.1.28)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채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
 - 적격가능 대상자 : 별도첨부
 - 미정은 구성지구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적격여부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
- 이주대책 시행방법
 - 이주택지 공급 ⇒ 주택특별공급 ⇒ 이주정착금 순으로 시행
 - 이주주택지 : 1세대 1택지($165\text{m}^2 \sim 265\text{m}^2$)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

- 주택특별공급 : 이주주택지 공급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공급
- 이주정착금 : 이주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등에게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(5백만원~1천만원)을 지급
-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지급

나. 생활대책

□ 생활대책 대상자

- 선정기준 :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, 영업, 농업(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), 축산 및 임업 등(이하 "영업등"이라 한다)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등의 보상대상자
- 생활대책의 기준일 : 2008년 1월 28일 (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-7호,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(삼호·구성·초송지구) 개발구역 지정)
 - ※ 관련법률 : 『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』 제5조 및 동법 제31조
- 농업 등 생활대책 대상자는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82조에 따른 "보상협의회"에서 협의하여 정할 예정임

□ 생활대책 시행방법

- 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 : 공급되는 부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
-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
- 직업훈련·취업알선 및 창업지원
- 상세한 내용은 상기 "보상협의회"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임

다. 이주·생활대책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(미등기 소유자·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)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.

라. 해남군 (인터넷)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마. 이주·생활대책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

4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(이주·생활 대책 포함)

가. 구성지구 보상사무소

- 주 소 :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(우편번호: 59014)
- 전화 및 팩스번호 : ☎ 061-535-2795, FAX:061-535-2794

나.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

- 주 소 : 전라남도 해남읍 군청길 4 2층

5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16. 05. 31 ~ 2016. 06. 30 (1개월)

가.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(이주·생활 대상자 포함)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
나.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, 6월 30일까지 구성지구 보상사무소 앞으로 발송된 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.

다.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평일 9:00~18:00이며, 토요일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6. 보상시기 및 방법

가. 보상의 시기는 2016년 11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.

※ 단,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나. 보상가격 결정은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(보상액의 산정)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.
- 다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.
- 라.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,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7. 보상의 절차

- 가.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보상협의요청(개별통보)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 → 공탁
- 나.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83조 (이의의 신청) 내지 제85조(행정소송의 제기)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8. 기타 사항

- 가. 편입토지 지번, 면적 등은 추후 지적측량 결과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가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사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상기 보상일정 등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주소·거소·소유자 불명·미등기 토지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.
- 라.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.
- 마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지구 보상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바. 보상절차, 토지조사의 열람, 이의신청방법(소정양식),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구성지구 보상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[☎ 061-535-2795, FAX: 061-535-2794]

2016년 6월 16일

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(주) 대표이사

